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797
----------	-----

2019. 9. 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19. 7. 31. 김재형 의원 발의 (2019. 8. 13. 회부)

## 2. 제안이유

- 고시원 및 쪽방 거주가구는 대부분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상태임.
-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조례상 시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쪽방 거주민의 경우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고시원 및 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으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제10호 신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건축법」, 「주거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 5. 검토의견

-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의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조례상에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사업을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의 하나로 포함하고자, 김재형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가.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

- 서울시(주택건축본부)는 지난 2012년 수립한 시장방침<sup>1)</sup>을 근거로 매년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sup>2)</sup>.

- 지원대상은 2009년 7월 8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

1)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건축기획과-3949호(2012.3.6.), 시장방침 제 56호

2) 2012년~2018년까지는 건축기획과 소관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관한 특별법」(2009.7.1. 공포)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고시원<sup>3)</sup>이며, 고시원 소유주가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고시원을 선정하게 되고, 서울시는 공사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지원<sup>4)</sup>하여 안전한 주거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해 오고 있음.

- 현재 서울시 내에 위치한 고시원은 총 5,840동(2018년 기준)으로 전국 고시원(11,892동)의 절반(49.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009년 7월 8일 이전에 건립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고시원은 총 1,061동(2018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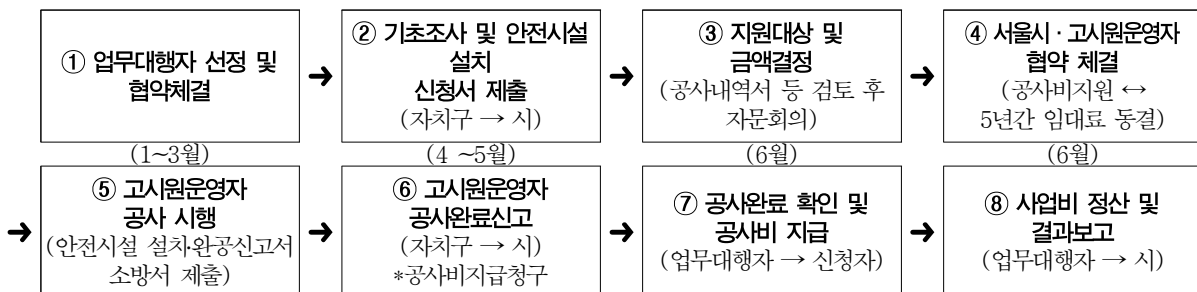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현황>

(단위 : 동)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189	167	60	140	214	359	144	306	143	73	133	133	248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총
171	99	165	170	180	329	501	839	228	426	241	182	5,840

(자료 : 소방재난본부 2018 기준, 출처 : 건축기획과)

- 3) 2009년 7월 8일 개정법 시행일 전 영업 중이었던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
- 4)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임.



<서울시내 노후 고시원(2009.7.8. 이전 건립) 현황>

(단위 : 동)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19	19	12	35	31	14	27	37	18	5	21	18	32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총
46	13	25	23	16	54	97	361	44	47	12	37	1,061

(자료 : 소방재난본부 2018 기준, 출처 : 건축기획과)

○ 서울시(주택건축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2개소(7년간 총 222개소)의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sup>5)</sup>해오고 있었으나, 작년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sup>6)</sup>발생 후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3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sup>7)</sup>을 수립·발표하였음.

- 서울시의 종합대책 발표이후 2019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점

5) 2012~2018년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현황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시원수 (실수)	222 (8,979)	7 (267)	58 (2,316)	34 (1,445)	39 (1,581)	29 (1,189)	25 (982)	30 (1,199)
지원금액 (천원)	3,444,130	110,865	785,252	470,934	577,080	538,478	406,743	554,778

(자료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6) 2018년 11월 9일 새벽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 11명이 부상당함. 해당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대상 고시원이 아니었으며, 2015년 고시원 소유주가 서울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음에도, 해당 건축물 소유주가 이를 반대하며 설치가 무산되었고, 이후 화재발생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7) 지역건축안전센터-5279(2019.3.22.)

<주요발표내용>

①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수립(국토부 건의사항)

- 방 실면적(전용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이상, 각 방마다 채광창 설치 의무화

②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확대시행

- 전년대비 사업예산 증액 6.3억 → 15억(75개소 지원) / 외부 피난계단, 비상사다리 등 피난시설 설치 지원

③ 고시원 거주자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으로 포함

④ 노후고시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공급

수8)결과 139개소에서 지원을 신청하여 금년도 지원목표인 75개소를 초과 달성할 예정이며,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고시원이 총 1,061동임을 감안할 때 향후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9)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기본계획”10)과 세부추진계획11)을 수립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12)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이후 내려진 국무총리 지시사항13)과 정부관련부처 회의(‘18.11.14)에서 서울시(주택건축본부)가 건의한 “간이스프링클러 공사비 국비지원 요청”이 채택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재원마련’을 요청14)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사업으로서 국비 및 시비, 자부담금을 1:1로 매칭15)하여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임.

8) 2019.3.25. ~ 4.19 25개 자치구 접수, 139개소 고시원 신청·접수

9)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를 12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10) 예방과-13542호(2019.5.16.)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기본계획”

11) 예방과-21042호(2019.8.1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세부 추진 계획”

12) 2019년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비로 30억 2천4백만원을 추경편성함

13) 제48회 국무회의(2018.11.13.)

14) 화재예방과-3371호(2019.5.13.)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준비 요청

15) 2019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년 8월 2일 가결되며 소방청 소관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1133-300)” 예산으로 국비 97.4억(사업기간 `2019 ~ 2020년)이 추가 편성됨

- 소방재난본부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총 945개소를 지원대상<sup>16)</sup>으로 하나, 고시원의 경우 2009년 7월 8일 이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고시원으로 주택건축본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나<sup>17)</sup>, 사업비 지원에 있어 임대료 동결과 같은 의무부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고시원의 소방시설 설치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시될 경우, 2012년부터 추진해온 지원사업의 시행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안정적 예산편성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특히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추진근거가 조례에 명시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나. 쪽방 밀집지역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쪽방촌 소방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시장요청사항<sup>18)</sup> 및 서울시정 4개년계획 핵심과제<sup>19)</sup>를 근거로 쪽방 밀집지역에 비상벨 및 재난위

16) 예방과-13542호(2019.5.16.)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기본계획”

고시원(5,706개소)		산후조리원(154개소)	
간이S/P 설치	간이S/P 미설치	간이S/P 설치	간이S/P 미설치
4767	939	148	6

17) 소방재난본부는 주택건축본부의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축본부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고시원은 제외할 계획임.

18) 기획담당관-992(2018.1.22.) “시장 요청사항 전달 :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19) 서울시정4개년계획, 안전분야 과제1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pp.413~419

치 식별도로의 설치와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등을 점검·교체·신규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현재 서울시내 쪽방촌은 총 12개 지역으로 총 3,183명이 거주('19. 4월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최근 3년간 8건의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쪽방촌 현황>**

연번	관할	지역명	동수	세대수	거주인원	소화기	감지기	비상벨	보이는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계		12개 지역	316	3,855	3,183	2,402	2,533	44	85	33
1	종로	돈의동	85	737	570	663	648	7	9	4
2		창신동	57	525	328	465	438		13	5
3	중부	남대문 경찰서 뒤	19	514	469	209	175	14	19	3
4		연세빌딩 뒤	2	45	37	27	16			2
5		회현동	4	64	39	60	50		2	2
6		중림동	12	245	172	194	269			4
7	용산	동자동	66	1,087	962	502	365	16	27	6
8		갈월동	2	71	76	37	40		2	1
9		후암동	2	26	16	4	11		1	1
10	영등포	영등포동	44	431	404	154	400	4	2	4
11		영등포본동	3	17	17	8	20	3		
12		문래동	20	93	93	79	101		10	1

(자료 : 예방과-11108호(2019.4.18.), “쪽방촌 비상벨 설치 등 안전관리강화 추진결과”, 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8	3	1	2	16,457
2018년	5	2	1	1	14,888
2017년	1	1	-	1	1,007
2016년	2	-	-	-	562

(자료 : 예방과-11108호(2019.4.18.), “쪽방촌 비상벨 설치 등 안전관리강화 추진결과”, 소방재난본부)

-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사업을 주거복지사업에 포함할 경우 앞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의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시행과 예산지원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쪽방거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추진근거가 명시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
- 다만, 주거복지사업 시행부서(주택건축본부)와 쪽방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 등을 담당하는 부서(소방재난본부)가 다르므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작년 2월 건축기획과에서 실시한 “돈의동 쪽방건물 현장조사 결과”<sup>20)</sup>에 따르면, 천정부 공간이 협소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쪽방건물은 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되는 만큼, 법령상의 소방안전기준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만일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가 미흡할 경우 화재 발생시 미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따라서 쪽방 밀집지역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외에 경보설비 또는 피난구조설비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소방시설<sup>21)</sup>을 설치·지원 하는

20) 건축기획과-2954호(2018.2.7.) “돈의동 쪽방건물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가능성 현장조사 결과보고”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붙임 2) 참조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 다. 다른 조례와의 중복 시행여부

- 최근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권 개선, 거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와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sup>22)</sup>.
- 이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일반조례로 제정된 반면, 이 개정조례안은 고시원 및 쪽방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거복지사업으로 명시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사업의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문의 설치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시급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주거기본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라. 관계부서 의견(붙임 3 참조)

-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 주거 기본 조례를 소관하는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원안동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소방재난본부(예방과)도 별도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음.
- 다만,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쪽방 건물 현장조사 결과와 같이 기술 및 법적, 행정적 측면 등 다방면에

22) 서울특별시조례 제7263호, 2019.7.18.제정, 2019.8.8.시행

서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음.

##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고시원 및 쪽방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sup>23)</sup>발생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 보장 및 주거권 보호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화재예방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 개정조례안은 고시원 및 쪽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복지사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소방재난본부와 주택건축본부의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사업시행 방식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쪽방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상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급상황 발생 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존재하므로, 취약거처가

---

23) 2018년 11월 9일 새벽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외에도 같은해 1월 5일에는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1월 20일에는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월 26일에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요양시설)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시원과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및 쪽방밀집지역에서 화재사고가 계속되었음.

위치한 지역 또는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방시설(붙임2 참조)의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한승윤
연락처	02-2180-8207
이메일	syhan@seoul.go.kr

## [붙임 1] 관계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부 칙 <법률 제9330호, 2009. 1. 7.>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붙임 2]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소화기구
    - 1) 소화기
    -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3) 자동확산소화기
  - 나. 자동소화장치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4) 가스자동소화장치
    - 5) 분말자동소화장치
    -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 1) 스프링클러설비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 1) 물 분무 소화설비
- 2) 미분무소화설비
- 3) 포소화설비
-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5) 할론소화설비
- 6) 할로젠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7) 분말소화설비
- 8) 강화액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 1) 비상벨설비
-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 1) 피난사다리
- 2) 구조대
- 3) 완강기
-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1) 방열복,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 [붙임 3] 관계부서 의견

부서명	제출의견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p>원안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법적·행정적·유지관리 등 다방면에서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에서 종합적 검토하여 기술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능한 쪽방건물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 추진, 예상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확대 검토</li> </ul>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p>원안가결(별도 이견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노후고시원 국비보조사업과의 지원 대상 중복 등을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와 협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li> <li>- 쪽방 거주자 지원사업 추진 시 기술적, 법적,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 후 추진 필요</li> </ul>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p>별도 의견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원 등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각 건축물의 관계인이 설치 및 유지·관리하며 우리 부서는 그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임</li> <li>-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음</li> </ul>